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22682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최성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이정현 외 1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나1333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8.

주 문

원심판결 중 2021. 5. 11. 주식회사 □□□의 발주에 따른 변압기 납품행위에 관한 금지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압기 제작·공급 등

1)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동력분산식 철도차량(Electric Multiple Unit, 설계속도 180km/h, 이하 'EMU-180'이라 한다)의 제작을 발주하였다. 소외 1 회사는 피고에게 위 철도차량에 탑재될 변압기(이하 'EMU-180 변압기'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변압기의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4. 27. 피고와 사이에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년 초경 피고에게 EMU-180 변압기 16대를 공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5. 25. 피고로부터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설계속도 150km/h, 이하 'EMU-150'이라 한다)에 탑재될 변압기(이하 'EMU-150 변압기'라 한다)의 제작을 수주하고, 2013년 초경까지 피고에게 EMU-150 변압기 46대 및 견본 변압기 1대를 공급하였다(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EMU-180 변압기 16대와 EMU-150 변압기 47대를 통틀어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변압기의 부품 형상, 크기, 명칭, 조립형태 등이 기재된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도면에는 '비밀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원고의 자산으로서 원고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변압기 납품 등

1) 피고는 2013. 3. 26. 소외 1 회사로부터 EMU-150 변압기 1대의 제작을 수주하여 이를 납품하였다(이하 '제1 납품행위'라 한다).

2) 피고는 2017. 12. 8. 한국철도공사로부터 EMU-150 변압기 2대의 제작을 수주하여 2018. 10. 4. 한국철도공사에 이를 납품하였다(이하 '제2 납품행위'라 한다).

3) 피고는 2019. 10. 7.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EMU-150 변압기 70대의 제작을 수주하여 2023. 6. 30.까지 소외 2 회사에 63대의 변압기를 납품하였다(이하 '제3 납품행위'라 한다).

4) 피고는 2021. 5. 11. 소외 2 회사로부터 EMU-150 변압기 89대의 제작을 수주하여 2023. 8. 31.까지 소외 2 회사에 2대의 변압기를 납품하였다(이하 '제4 납품행위'라 하고, 위 각 납품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납품행위'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납품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이하 '(카)목'이라 한다]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카)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민법에 따라,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 부정경쟁행위로 만든 제품의 폐기 및 3,016,547,73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변압기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변압기와 이 사건 도면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변압기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변압기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납품행위 중 제2, 3, 4 납품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제1 납품행위는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카)목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투입된 이 사건 변압기 기술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변압기에 관한 기술의 보호기간은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로 이 사건 변압기를 납품한 2011년 초경부터 10년 동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가 2019. 10. 7. 소외 2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보호기간 내에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원심판결 별지 1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소외 2 회사에 납품해서는 안 되고 이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21. 5. 11. 소외 2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에 따라 변압기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소외 2 회사에 납품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

5) 제1 납품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제2, 3 납품행위는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806,811,264원[=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 13,230,000원 +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 793,581,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 납품행위는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한 보호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제1, 2, 3 납품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

1) (카)목 부정경쟁행위와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피고의 제1, 2, 3 상고이유)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

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2, 3 납품행위가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카)목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제1 납품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카)목의 적용범위와 성립요건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성과 등'의 보호기간 도과 여부 등에 관하여(피고의 제4 상고이유)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제1, 2, 3 납품행위에 관하여 피

고에게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제품의 폐기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카)목의 '성과 등'의 보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피고의 제5 상고이유)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제1, 2, 3 납품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806,811,264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기여도 산정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4 납품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원고의 제1, 2 상고이유)

1) 원심은, 영업비밀에 관하여 보호기간이 제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목의 '성과 등'도 기술과 관련된 경우에는 일정한 보호기간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변압기에 관한 기술의 보호기간은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로 이 사건 변압기를 납품한 2011년 초경부터 10년 동안이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인 2021. 5. 11. 피고와 소외 2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제4 납품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성과인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제4 납품행위 당시 이미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쌓아 온 철도차량용 변압기 제작 관련 기술과 노하우

(know-how)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의 요구 내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 사건 변압기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변압기 제작 관련 기술력은 철도차량용 변압기 기술 동향에 관한 조사나 관련 분야의 논문 등에 의해서도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그 계약 목적을 벗어나 이 사건 변압기에 관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변압기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변압기를 제조·납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제조·납품하는 회사로서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변압기를 모방한 변압기를 제조·납품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원고는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상당한 자금과 노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의 회수 기회를 상실하였다.

라)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변압기에 관한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EMU-150 변압기 등에 관한 기술력을 단기간에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마) 원심은 이 사건 변압기에 관한 기술의 보호기간을 2011년 초경으로부터 10년간으로 제한한 다음, 제3 납품행위는 그 보호기간 내의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만 제4 납품행위는 보호기간이 지난 후의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3 납품행위와 제4 납품행위는 그 각 종기(終期) 사이의 간격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납품대상이 동일하며, 그 사이에 해당 변압기에 적용된 기술적 특징이나 피고의 기술력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각 납품행위와 관련한 이 사건 변압기의 보호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가 2023. 8. 31.까지 제4 납품행위를 통하여 납품한 EMU-150 변압기 역시

2011년 초경 원고로부터 최초로 제공받은 이 사건 변압기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압기는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가치 있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3) 결국 제4 납품행위가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카)목의 '성과 등'의 보호기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제4 납품행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제4 납품행위에 관한 금지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